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 61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15.5.18.)으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나. 협의회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앞에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협의회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u> <u>설립 및 지원</u>
<u><신 설></u>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 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 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 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 여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3조(협회의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 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 비
<u>제22조 (생 략)</u>	<u>제24조 (현행 제22조와 같음)</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u>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협의회 운영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장 김인철